



ESG

(손)자회사 신규 상장 시 의무적으로 확보할 지분 50%로 상향 예정 (현행 30%)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민생 밀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분야 시장 환경 및 소비 환경 개선, △대기업집단 규율 효과성 제고 등 4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 및 현황을 보고했다.

이 중 ‘대기업집단 규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을 상향,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을 판단 시 자기주식 제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 지원, 사익편취를 위한 사업 기회 제공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담겼다.

[표1] ‘대기업집단 규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

구분	내용
건전한 지주회사 체제 유도를 위한 지주회사 제도 보완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 현행: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장 30%, 비상장 50% → 개정 후: 신규 중복상장 시 50%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기준 개선	사익편취 규제 대상^{주1} 지분을 판단 시 자기주식 제외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부당 내부거래)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해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예: 거래 제공 규모(액수)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과징금 산정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반복적 법 위반 억제를 위해 고발 기준 구체화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부당 내부거래)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 지원 행위 등을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 밀집(식품, 의료 등) 분야 집중 감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사업 기회 제공, 자금 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주1: ① 총수일가, ②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보유 계열회사, ③ 그 계열회사의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

자료: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 중 자손자회사 등이 신규 상장할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회사와 동일한 50%로 높이는 방안은,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함에 더 붙어,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중복상장 ‘절차’가 아니라 ‘유인’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긍정적

8월 3일부터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의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회 결의 후 자회사 통지 및 공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회사 상장 심사 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을 토대로 상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도 검토한다. 주주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하지만 물적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만 주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같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중복상장 규제는 (손)자회사 중복상장을 강행했을 때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득(비교적 낮은 지분율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금 유치)을 종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중복상장을 추진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별첨]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의무지분을 관련 조항

[표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생략)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생략)

(생략)

(생략)

자료: 법제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